

난민 · 이주민 모의재판 대회 규칙

제1장 목적과 정의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 관련 사항을 정함으로써 난민·이주민에 관한 이해를 널리 알리고 법체계를 숙지토록 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 저변의 인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연대회”는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를 말한다.
2.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함)”는 경연대회를 주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경연문제”는 운영위와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 기관 및 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연대회 공식문제를 말한다.
4. “재판관지침서”는 규칙에 따라 경연대회 재판관들의 사용을 위해 운영위에서 준비한 경연문제와 관련된 법률 및 근거에 관한 답안을 말한다.
5. “채점기준표”는 변론서 채점위원들의 사용을 위해 변론서 채점위원과 운영위의 합의로 작성된 기준을 말한다.
6. “변론서”는 규칙에 따라 작성되고 제출된 각 팀의 서면 변론서를 말한다.
7. “구두변론”은 규칙 제6장에 따라, 원고팀과 피고팀 간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구두변론 경연을 말한다.
8. “벌칙”은 규칙 제9장에 따라 실격이나 원 점수의 차감 등 규칙위반에 따르는 결과를 말한다.
9. “참가팀”(이하 ‘참가팀’ 또는 ‘팀’이라고 함)은 규칙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추고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팀을 말한다.

10. “팀원”은 규칙에 따라 팀의 구성원으로 등록되는 인원을 말한다.
11. “법정”은 2개의 팀이 재판부를 대상으로 구두변론을 진행하는 1개의 독립된 공간을 말한다. 단, 구두변론이 화상회의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화상회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1개의 독립된 화상회의실을 말한다.

제2장 경연대회의 조직 및 참가

제3조 (주최 및 주관)

경연대회는 공익사단법인 정,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법인(유한) 동인 공익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재단법인 동천(이하 ‘주최기관’이라고 함)이 공동 주최한다.

제4조 (운영위의 구성 및 권한)

운영위는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석 1인 및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가 지명하는 위원 및 외부인사 8인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1. 경연대회 문제출제자, 문제검토위원, 변론서 심사위원 및 재판관 선정
2. 경연대회를 위한 자료의 소유 및 관리

제5조 (경연대회를 위한 자료의 소유권)

규칙과 경연문제를 포함한 경연대회를 위한 모든 자료는 전적으로 운영위의 단독 자산이며, 운영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경연대회의 주최 또는 참가 이외의 그 어떤 목적으로도 복제될 수 없다. 또한 모든 변론서는 명시된 동의 없이 재발행 될 수 없다.

제6조 (경연대회의 구성)

1. 경연대회는 변론서 심사로 진행되는 예선심사와 구두변론 심사로 진행되는 본선심사로 구성된다. 본선심사는 예선심사를 통과한 6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본선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두 팀 중 결선을 통하여 최종 우승팀을 정한다.

다. 최종 우승팀에게 최우수상을, 나머지 결선 진출팀에게 우수상을 시상한다.

3. 본선 진출한 팀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서면을 작성한 팀에게 최우수서면상을 시상한다.
4. 본선 진출한 팀 가운데 가장 우수한 변론을 진행한 팀원에게 최우수변론상을 시상한다.
5. 본선 진출한 팀 가운데 결선 진출한 팀을 제외하고 종합점수에 따라 점수가 높은 두 팀에 대해 장려상을 수상한다.
6. 단, 심사결과 등급별 시상기준에 부합하는 참가팀 또는 참가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규칙 개정과 해석)

1. 이 규칙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운영위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1. 이 규칙의 적용과 해석에 관하여는 운영위의 최종결정에 따른다.

제8조 (팀의 자격조건)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경연대회의 참가자격은 참가신청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및 일반대학원(국제대학원 등 포함)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휴학생 포함)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이다. 단, 법학박사학위 소지자, 법학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자, 변호사, 공무원, 학계, 연구원 및 실무기관 종사자는 제외한다.
2. 규칙에 따라 허가 없이 자격 미달인 자를 팀원으로 참여시키거나 부당한 외부조력을 받거나, 재판관지침서를 활용하거나, 다른 팀의 변론서를 이용한 팀은 경연대회에서 실격처리된다.

제9조 (팀의 구성과 선발)

1. 각 팀은 4인으로 구성한다. 단 구성원 중 1인은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며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팀원의 교체는 경연문제 공개 이후에는 허락되지 않는다. 다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운영위의 서면 허가가 있는 경우는 팀원의 교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팀원의 과반이상의 변경은 불가하며 위 제1호의 구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2. 운영위는 경연대회의 목적 달성과 합치되며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팀원의 변경을 허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 (상대팀의 변론서의 사용)

1. 각 팀은 경연하게 될 상대팀의 변론서 외 다른 어떠한 참가팀의 변론서를 검토하거나 그에 관련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경연대회 진행 중 습득한 상대팀의 변론서를 변론 외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다른 이에게 전송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팀의 익명성 보장)

1. 각 팀은 경연대회 기간 중 그 어느 때에도 자신의 소속학교나 신상명세를 재판관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신의 학교 또는 신상명세를 재판관에게 공개한 팀은 그 공개가 구두변론 시 행하여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전자격이 박탈되거나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2. 운영위는 참가팀의 소속학교나 신상명세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3. 운영위 중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위원은 서면접수가 시작되는 때부터 위 정보에 대해 접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운영위 회의에 부득이 위 정보가 노출되어야 하는 경우 재판관인 자는 운영위 회의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제3장 팀의 등록

제12조 (팀의 등록)

각 팀은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팀명, 참가 팀원, 팀별 연락처 등이 명시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팀별 연락처로의 공지는 팀원 전체에 대한 공지로 간주한다. 팀명은 자유롭게 창작하여 제출하되, 소속 학교 등 신상정보를 합리적인 제3자가 유추할 수 있는 팀명이나 혐오·차별적 표현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팀명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팀원의 등록)

운영위는 규칙 제2장의 규정에 따라 팀원으로 신청한 자가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제14조 (팀 번호 부여)

운영위는 각 팀에 대하여 본선 24시간 전에 무작위로 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등록정보의 변경)

등록정보에 변경이나 추가된 사항(팀의 구성에 대한 변경 또는 연락처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각 팀은 즉시 운영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장 재판관

제16조 (자격조건)

운영위는 주최기관과 협의를 거쳐, 난민·이주민 분야에서 명망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경연대회의 재판관으로 임명한다.

제17조 (재판부의 구성)

1. 본선 재판부는 3인으로 구성하고 총 3개의 재판부를 둔다.
2. 본선 재판부는 재판장 및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재판관 중 1인은 서기를 겸임한다.
3. 본선 재판부 3인 중 1인은 운영위원 중에서 참여할 수 있다.
4. 결선 재판부는 운영위 소속 재판관을 제외하고 3인으로 구성된 1개의 재

판부를 구성한다. 단, 본선과 달리 결선 재판부에서는 운영위에서 1인이 재판관이 아닌 간사로 참여한다.

제18조 (팀의 익명보장)

재판관은 경연대회 중 참가 팀원의 소속학교나 신상명세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참가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관)

1. 재판관은 자신이 재판하는 팀이나 팀원과 재판과 관련된 부당한 이해관계나 상당한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운영위에 이를 알리고 재판 참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두변론에 출전하는 팀은 재판관이 상대팀이나 팀원과 재판관 관련된 부당한 이해관계나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관 기피신청을 구두변론 개시 전 서기를 통해 운영위에 할 수 있다.

제20조 (재판관 지침서)

재판관은 재판관지침서의 내용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재판관의 의견제시)

구두변론 종료 후 재판관은 출전팀의 변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관은 경연대회의 시간제한과 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판관은 어떤 팀에게도 점수를 공개하거나 또는 재판관지침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공개하게 되는 의견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제5장 변론서

제22조 (변론서의 제출)

1.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팀은 원고와 피고 변론서 및 기타 운영위가 정하는 기타 모든 문서를(이하 ‘변론서 등’이라고 한다) 준비하여야 한다.

2. 모든 팀은 변론서 등을 변론서 제출마감일 24시까지(이하 ‘변론서 제출기한’이라고 한다) 운영위가 지정하는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는 변론서 제출기한까지 도달되는 변론서 등을 접수한다.
3. 같은 팀에서 마감기한 전까지 여러 번 변론서 등을 접수하는 경우 변론서 제출기한에 가장 가깝게 제출된 변론서 등을 접수하는 것으로 하며, 변론서 제출기한 이후 변론서 등의 수정 및 재제출은 금지된다. 다만, 경연대회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참가팀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변론서 제출기한 이후 제출된 변론서 등은 접수할 수 있다.

제23조 (변론서 내용)

1. 변론서의 구성: 변론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가. 대회운영을 위한 구성
 - (1) 표지
 - (2) 서면 목차
 - (3) 판례색인
 - (4) 변론의 요약
 - (5) 서면 (각 ‘소장’ 및 ‘답변서’)
 - 나. 변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1) 관할권진술
 - (2) 제기된 문제요약
 - (3) 사실관계의 진술
 - (4) 변론(결론과 해결방안 포함. 서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표지: 각 변론서의 앞표지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팀명
 - 나. 변론부문: 원고의 변론서인 경우 “원고”, 피고의 변론서의 경우 “피고”로 기재
 - 다. 경연대회연도
 - 라. 사건명칭
 - 마. 문서제목(즉, 원고의 경우 ‘소장’, 피고의 경우 ‘답변서’)
3. 판례색인

판례색인에는 변론서에서 인용된 법률상 근거를 나열하여야 하고, 각 근거가 인용된 변론서의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의 진술

사실관계의 진술에는 근거 없는 사실, 사실의 왜곡 및 법적 결론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참가팀은 경연문제에서 새로운 사실을 만들거나 비합리적인 추론을 끌어내지 않고, 주어진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합리적인 사실 추론 및 논리 추론에 따라 변론을 펼쳐야 한다.

5. 변론의 요약

변론의 요약은 변론에 포함된 사항의 단순한 반복보다는, 변론서의 주요 부분에 대한 요약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24조 (변론서 형식)

1. 문서형식: 각 변론서는 별도의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변론서는 아래아 한글로 작성한다.
2. 서면 크기와 여백: 변론서의 모든 페이지는 A4 크기로 하고, 줄 간격은 160%로 하며, 사방에 최소 2.54cm로 똑같은 여백이 있어야 한다. 운영위는 현저히 규칙에 맞지 않은 변론서를 재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위의 요구에 따라 재제출된 변론서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3. 글꼴과 글꼴 크기: 표지, 제목, 소제목 및 각주를 제외하고 변론서 본문의 글꼴과 글꼴 크기는 바탕체 12포인트로 통일하여 작성한다.
4. 길이: 변론서의 총 분량은 25장 이내로 하며, 이 중 변론의 요약은 2장 이내로 한다.
5. 각주 및 인용
 - 가. 각주는 변론서 본문의 진술 또는 서술의 출처를 밝히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미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각주는 사법정책연구원의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에 따르며, 실질적인 변론, 사례, 또는 원문을 포함하지 않는다. 각주는 제한된 분량에 포함된다.
 - 나. 변론서의 판례 색인과 각주는 합리적인 독자가 일반적 출판물에서 판례를 확인하고 찾을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한다.
6. 변론서의 익명성: 참가자의 이름 또는 학교명을 변론서에 나타내거나 이

를 유추할 수 있는 단어 또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위는 재판관에게 변론서를 제출하기 전 팀원이나 학교 명칭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삭제할 권한을 갖는다.

제6장 구두변론 절차

제25조 (일반절차)

구두변론은 60분으로 이루어진다. 각 팀에게는 30분이 주어진다. 원고의 모두 변론 및 피고의 첫 번째 반론에 대해 각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재판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변론시간을 제한하거나, 재판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위해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결석 구두변론 절차)

한팀이 예정된 구두변론에 출석하지 않는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위는 20분을 기다린 후에 출전한 팀만을 대상으로 구두변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팀의 구두변론은 결석팀이 참석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가능한 범위까지 재판관에 의해 평가받는다. 이러한 경우에 예정된 경연에 출석하지 못한 팀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제27조 (경연대회 의사교환)

1. 경연대회의 모든 의사 교환은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떠한 서면의사교환이나 증거물도 팀원에 의해 재판관에게 제출되거나 전달될 수 없다.
2. 발표자와 재판관 상호 간 구두 의사교환: 각 발표자는 주어진 시간 동안 재판관과 의사 교환을 할 수 있고, 재판관 또한 발표자와 의사 교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상대 팀의 구두발표 동안 정숙을 요구하는 경우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변론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재판관은 양팀의 팀원과 직접 의사 교환을 할 수 있다.
3. 법정 내 의사 교환과 활동: 변론인 석에 앉아있는 팀원 간 의사 교환은

구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팀원과 방청객은 정상적인 구두변론의 진행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삼가야 한다.

제28조 (변론의 방청)

모든 구두변론은 방청객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재판관은 운영위와 사전협의를 거쳐 방청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출전팀의 관련 방청객은 그 팀이 출전한 구두변론이 열리는 법정에서 참석할 수 있으나, 해당 출전팀과 의사 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녹음과 녹화)

구두변론의 녹음 또는 녹화는 재판관이 참가 팀 및 운영위의 동의를 받아 허용할 수 있다. 구두변론 참가 팀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연대회가 종료되기 전에는 녹음 또는 녹화된 내용을 보거나 들을 수 없다.

제30조 (법정에서의 팀의 익명성)

출전팀의 팀원, 또는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은(방청객 포함) 구두변론이 열리는 동안 출신 학교나 기타 신상정보를 표시할 수 없다. 특히, 재판관에 대한 진술 등을 통한 신상정보 고지행위, 학교명이나 로고를 포함한 기호가 표시된 일체의 물건을 재판관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행위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출신 학교나 신상정보를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 (법정 내 컴퓨터 등 사용)

구두변론이 열리는 동안, 변론에 참가하는 발표자, 같은 팀원 및 이들과 직접 연락이 가능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목적을 불문하고 인터넷과 메시지 전송이 가능한 휴대전화, 컴퓨터 또는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법정에서 휴대전화는 항상 꺼져있어야 하며, 보이지 않아야 한다. 단, 경연대회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각 팀원은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용 및 접속을 위한 컴퓨터 또는 다른 형태의 전자기기 1개를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용 및 접속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제32조 (법정 내 시계 사용)

발표자 또는 팀원은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를 사용할 수 있다. 경연대회의 공식적인 구두변론 시간은 서기 또는 재판관이 계산하는 시간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제7장 경연대회 진행 절차

제33조 (본선)

6개 이상의 팀이 참가 신청한 경우, 운영위는 변론서 심사를 원칙으로 6개 팀을 선별하여 본선을 진행한다(이하 ‘본선 진출 팀’이라고 한다). 본선 진출 팀은 각 1회 원고로, 1회 피고로 총 2회의 구두변론에 참가한다. 만약 6개 미만의 팀이 참가 신청하는 경우, 운영위는 경연을 축소할 수 있다. 경기 일정, 본선 대진표 편성 및 채점 등은 운영위가 원활한 경연대회 운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4조 (대진표)

운영위는 본선 24시간 전에 대진표를 공개하고 대진표 공개 직후 본선 진출 팀에 대해 무작위로 번호를 부여하며, 번호 순번에 따라 본선 대진을 결정한다. 본선 진출 팀이 각 대전하게 될 상대팀의 변론서는 대진표 및 팀 번호 부여 직후 배포됨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는 참여 팀의 결석 또는 다른 우발사고를 대처하기 위해 대진표를 수정할 수 있다. 대진표가 새롭게 편성되는 경우, 새롭게 편성된 본선이 시작되기 최소 15분 전에는 가능한 신속히 상대팀의 변론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35조 (결선)

1. 본선 경연 결과, 상위 점수를 받은 2개의 팀이 결선에서 서로 경연한다.
2. 결선에 참여하는 두 팀은 각 원고와 피고로 2회의 구두변론을 진행하여

야 한다.

3. 두 번의 변론결과에 대한 합산으로 최우수팀을 결정한다.

제8장 채 점

제36조 (채점방식)

1. 재판관은 해당 사안의 쟁점 파악, 실체법 및 절차법의 지식 및 우세한 논리 전개를 포함한 변론의 전반적 측면에 대하여 채점한다.
2. 변론서 점수는 운영위와 변론서 채점위원들이 합의하여 정한 채점기준표에 따른 채점에 따라 결정되고, 구두변론 점수는 재판관지침서에 따른 재판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3. 최종 점수는 변론서 점수와 구두변론 점수의 합으로 결정된다. 경연(본선과 결선 포함)의 평가 기준은 변론서 점수와 구두변론 점수의 비율을 1:2로 한다.

제37조 (변론서 점수)

1. 변론서 채점위원이 채점기준표가 정한 요건에 따라 최대점 100점을 기준으로 채점한 후, 벌칙조항에 따라 점수를 감한다.
2. 각 변론서 채점위원이 각각 부여한 점수를 합한다.

제38조 (구두변론 점수)

1. 3명의 재판관이 재판관지침서가 정한 요건에 따라 최대점 100점을 기준으로 채점한 후, 벌칙조항에 따라 점수를 감한다.
2. 3명의 재판관이 각각 부여한 점수를 합하여 참가 팀의 점수를 정한다.

제39조 (재판관이 두 명뿐일 경우)

만약 재판관이 두 명일 경우, 운영위는 그 둘의 점수의 평균을 구해 세 번째 점수를 산출해야 한다.

제40조 (결선 진출 팀의 결정)

본선 종료 후 최종 점수가 높은 2개의 참가 팀이 결선에 진출한다. 만약 2개 이상의 참가 팀이 최종 점수가 동일하여 결선 진출 팀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점수가 동일한 2개 이상의 팀 중 구두변론 점수가 높은 팀이 결선에 진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에 진출하는 2개의 참가 팀을 선발할 수 없는 경우, 재판부와 운영위가 벌칙 부과 사실 등을 고려하여 결선 진출 팀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 (점수의 비공개)

모의재판 경연대회 상 모든 경연의 점수는 비공개이다. 각 팀이 제출한 모든 변론서 등은 모의재판 경연대회 이후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9장 벌 칙

제42조 (변론서 벌점)

1. 변론서에 대한 벌점은 운영위가 부과한다.
2. 각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변론서 중 하나만이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규칙 위반 변론서에 대해서만 벌점을 부과한다.
3. 변론서에 대한 벌칙은 다음 표에 나오는 사항에 따라 부과된다.

위반내용	벌점(1에서 6까지 배정)
변론서 내 학교명 표시 등 익명성 유지의무 위반	5점
형식상 위반 · 지정 글꼴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지정 글꼴 크기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 인용 및 각주 형식이 부적절한 경우 · 글꼴 및 글꼴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한 경우당 1점씩 최대 6점
허위 문헌 또는 판례 인용, 또는 문헌 또는 판례의 취지에 현저하게 반하는 인용	5점
타 참가팀의 변론서를 참조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5점
제24조에 따라 변론서를 재제출한 경우	5점
분량을 초과한 경우	1페이지당 3점

제43조 (이의제기 절차)

구두변론 중에 상대팀의 규칙위반이 있다고 생각하는 팀은 해당 구두변론 종료 5분 이내에 운영위에 이를 서면으로 상세히 기술하여 신고한다. 단, 규칙위반을 제기하는 팀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에게 직접 신고할 수 없다.

제44조 (구두변론의 벌점)

운영위는 재판부와 협의하여 직권으로 또는 제43조에 따른 이의제기에 따라 구두변론 절차를 상당히 위반한 팀에 대해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45조 (재판관에 의한 벌점 부과 금지)

벌점의 부과는 운영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재판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표자의 점수에서 직접 벌점을 제할 수 없다. 재판관들은 규칙위반이 없다고 가정하여 채점하여야 한다.

제46조 (구두변론 벌점이 부과되는 행위)

구두변론 벌점은 다음 표에 나오는 사항에 따라 부과된다. 운영위는 구두변론 점수를 최종적으로 산출하기 전에 각 재판관의 점수를 합친 점수에서 벌점을 제한한다.

위반내용	벌점(1에서 6까지 배정)
법정 내 익명을 지키지 않고 신상정보, 학교명 등을 발설하는 행위	5점
법정 내에서 팀원 간, 또는 방청객과 부적절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5점
이 규칙에서 규정된 조건과 절차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5점

제47조 (임의 벌점)

제46조 상의 행위 외에도 운영위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반하여 재판의 진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 이 규칙의 조항과 취지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경우 최대 15점까지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 (통지와 이의신청)

운영위는 부과하는 구두변론에 대한 벌점에 대하여 벌점이 부과되는 팀에게 이를 가능한 빨리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받은 팀은 통지를 받은 후 10분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위는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여 그 결과를 가능한 빨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장 추가 절차를 공표할 권한

제49조 (규칙 제·개정)

운영위는 이 규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개정된 규칙은 각 참가팀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